

Samil Flash

2008년 1분기 적용 기업회계기준

다음의 개정 기업회계기준은 2008년 1분기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2007년 결산 시 이러한 개정사항을 조기 적용한 회사의 경우에는 전기와 동일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 종속회사,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인식에 관한 회계처리

개정 전

-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된 모든 일시적차이를 하나로 보아 인식여부 결정 후 측정하여 이연법인세 계상함.
-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이연법인세 인식 및 측정 방법의 차이 → 연결과 개별의 손익 및 순자산이 일치하지 아닐 수 있음.

개정 후

-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이연법인세 인식 및 측정 방법이 동일 → 연결과 개별의 손익 및 순자산의 일치
- **inside temporary difference**와 **outside temporary difference**를 구분함.
- **inside temporary difference** : 연결재무제표에서 별도의 자산과 부채로 나타나는 항목과 관련된 일시적차이.
즉, 내부미실현손익을 지분법손익을 통하여 제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처럼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의 일반원칙에 따라 인식하게 되는 일시적차이 부분은 별도로 분리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와 동일하게 이연법인세를 인식.
- **outside temporary difference** : 연결재무제표에 별도의 자산이나 부채항목으로 나타나지 않는 미배당이익, 피투자회사의 손익, 해외사업 환산자산이나 해외사업 환산부채, 및 피투자회사의 자본의 증감과 관련된 일시적차이.
이러한 일시적차이는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일시적차이로 보아 인식여부 결정 후 측정하여 이연법인세 계상함.
- 종속회사가 아닌 일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도 상기의 구분을 동일하게 적용함. 즉,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면 적용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2008년 1분기 적용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

개정 전

-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는 중간기간과 누적중간기간에 대해 모두 작성

개정 후

-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는 누적중간기간만 작성(비교재무제표 포함) [문단 7, 8]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개정 전

- 재고자산의 용도로 건설중인인 유형자산도 유형자산 기준서의 적용대상
-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라도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특정유형자산에 부속되어 사용되며, 사용빈도가 불규칙적인 것이라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

개정 후

- 재고자산의 용도로 건설 중이거나 개발 중인 유형자산의 경우 동 기준서의 적용대상이 아님. [문단 4]
-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라도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특정유형자산에 부속되어 사용되며, 사용빈도가 불규칙적인 것이라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고 규정 [문단 9]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

개정 전

- 신주인수권이 분리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주인수권대가를 계산

개정 후

-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대가는 발행가액에서 신주인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공정가액을 차감하여 산정 [문단 7]

2008년 1분기 적용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개정 전

- 투자회사가 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우선주, 장기성채권(대출채권 포함, 매출채권 및 담보자산으로 회수가능한 채권 제외) 등과 같은 투자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반영손실 추가 반영
- 종속회사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는 투자차액은 취득대가와 종속회사의 순자산 중 추가 취득한 지분과의 차이금액임

개정 후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금액이 '0'이하가 될 경우 손실을 추가적으로 인식하는 투자성격의 자산에 '단기대여금', '대차대조표일 후 회수된 채권과 같이 회수가능성이 큰 채권'이 제외됨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함 [문단 28]
- 종속회사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는 투자차액은 취득대가와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의 순자산 중 추가 취득한 지분과의 차이금액임. [문단 39(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

다음의 주석공시 항목이 변경됨.

- [신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중단사업손익이 없는 경우)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 설명
- [삭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세무조정항목별 내역,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사용된 세율 및 그의 계산근거, 유효세율(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 [문구변경]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역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또는 법인세비용 (중단사업이 없는 경우)의 산출내역'과 '중단사업손익 법인세효과의 계산근거'로 구분
- [문구변경] 세무상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에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이월된 결손금 중 당기에 소멸된 결손금의 법인세효과 →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이월된 세무상결손금 중 당기에 소멸된 세무상결손금의 법인세효과

2008년 1분기 적용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특수관계자 공시

- 특수관계자 정의 수정: 문단 9 (가)의 (1)~(8)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사례 이외에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 개인 및 개인의 친인척을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삭제 [문단 9]
- 주식공시 대상 변경:
지배회사와 최상위 지배자(개정 전: 최상위 지배회사)의 명칭. 단, 해당 특수관계자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 지배회사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하위 지배회사(개정 전: 그 차상위 지배회사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상위 지배회사)의 명칭 [문단 12]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 보증계약과 신용파생상품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시: 채무불이행 시 대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은 파생상품의 적용대상이 아님. [문단 3(3-15)] (개정 전: 보증계약)
- 보유중인 파생상품의 경우에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파생상품의 잔여 기간 전체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음. [문단 8다(3), 9다(2)]
(개정 전 : 보유중인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회피수단 지정 금지)
- 제한적으로 허용된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의 적용범위가 확장되도록 규정을 수정함. [문단 8나(6), (8-7), (8), (8-10), 9나(5)·(6), 10가(2)·(3), 10나(1)·(4), (10-7), (10-8), 11나]
- 적용시기 전에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음.

2008년 1분기 적용 기업회계기준

참고로 현재 개정 및 제정이 진행 중인 기업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개정: 미반영손실액 제외하고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의 손익·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지배회사지분 손익·순자산과 일치하도록 개정.
- 임대후분양기업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에 관한 회계처리: 회계기준적용의견서 제정 예정. 특별수선충당금이 이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부채로 계상 예정.
- 보너스 마일리지에 대한 회계처리: IFRIC 13 Customer loyalty programmes 참고하여 해석서 제정 예정. 마일리지 부여한 최초 매출거래를 공정가치 기준으로 구분하여 매출과 마일리지에 대한 부채로 각각 인식.

자세한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samil.com